

제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D(1992.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 원고, 차녀 망 E, 장남 피고를 두었다. 망 E은 F과 혼인하여 슬하에 G을 두었는데 2010. 11. 23. F과 이혼하였고 2011. 6.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제주시 H아파트 I호(이하 ‘망인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2. 201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은 위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망인 명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이 2015. 2. 23. 중도해지되었고, 위 정기예금 계좌에 남아 있던 24,363,929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 해약금’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1. 6.경부터 2019. 9.경까지 광주광역시, 파주시, 제주시에서 G,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9. 9.경 원고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G과 함께 피고의 집을 나갔고, 2020.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5. 18.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44년생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 6. 20. 망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5. 2. 23. 이 사건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 사건 정기예금 해약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모두 피고의 아파트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손해액

179,363,929원(=155,000,000원+24,363,929원) 중 일부인 1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9,666,666원(=179,000,000원×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9 내지 11, 2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망인은 2007. 10. 8.경 간경변증을 동반한 간섬유증 진단을 받고 망 E의 간병을 받으며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망 E이 2011. 6. 15.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손자 G와 함께 광주 광산구 L아파트 M호(이하 ‘L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 ② 망인과 J 사이에 2011. 6. 20. 작성된 망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계약금, 중도금의 입금계좌: N(계좌번호 생략), 피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6. 20. 1,500만 원, 2011. 7. 22.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③ 망인은 2011. 7. 22. J에게 ‘일금 1억 4,000만 원을 망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정히 영수함. 위 잔금은 망인의 아들인 피고의 N은행계좌로 입금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 ④ 망인이 2007. 9. 18. N은행으로부터 4,600만 원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망인 소유 아파트의 매수인인 J이 2011. 6. 20.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는 2011. 7. 6. 위 1,500만 원에 피고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하여 망인의 위 대출금 잔액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 ⑤ 피고는 2011. 7. 25. 망인 소유 아파트 관리비 160,750원을 납부하였고, 2011. 7. 26. 원고와 G이 피고의 집으로 이사오는데 필요한 이사비용 합계 2,117,700원을 지급하였다.
- ⑥ 피고는 2011. 6. 30. O 주식회사로부터 망 E의 사망보험금 100,099,63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⑦ 피고는 2013. 8.경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파주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파주시 P아파트 Q호를 보증금 7,200만 원에 임차하여 망인과 G를 부양하며 생활하는 한편 2013. 10. 13.

L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 되자 2015. 2. 17. 제주시 R건물 S호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곳에서 2019. 10.경까지 망인, G와 함께 생활하며 망인과 G를 부양하였다.

⑧ 망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비로 적어도 27,402,630원(=2013년 2,332,120원+2014년 9,409,150원+2015년 4,159,320원+2016년 3,295,610원+2017년 2,819,510원+2018년 4,763,690원+2019년 623,230원)을 지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의 존재, 그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이자 지급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의 주장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기, 2) 관리를 맡긴 재산의 범위 등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
- ②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허락 없이 망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도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와 2020. 10. 3.자 내용증명 우편에서 망인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의 허락 없이 망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원고는 피고가 2015. 2. 23. 이 사건 정기에금을 임의로 중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망인이 이 사건 정기에금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앞서 2011. 6.경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3) 이 사건 정기에금의 해지 및 피고 계좌로의 이체는 모두 T은행 U지점 창구에서 이루어졌는데, 통상 은행이 예금의 해지를 요구받는 경우 예금주 본인 여부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정기에금의 해지 및 피고 계좌로의 이체는 모두 망인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정기에금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④ 망인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은 2011. 7. 22., 이 사건 정기에금 해약금이 피고 계좌로 이체된 것은 2015. 2. 23.이고, 망인은 2019. 10.경까지 피고와 같이 생활한 반면, 망인이 2020. 10. 6.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⑤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망 E이 사망한 후 약 10년간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위하여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는데,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정기에금 해약금(이하 통칭하는 경우 ‘매매대금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원고나 망인으로 부터 별다른 경제적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망 E 사망 후 망인이 LA파트로 이사할 무렵인 2011. 6. 20.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정기에금이 피고가 망인과 함께

제주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R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2015. 2. 23.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아들을 위해 매매대금 등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등 합계 179,363,92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에게 그중 일부인 1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666,666원(=179,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매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① 앞서 2.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망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의 목적이나 용도로 한정하여 매매대금 등을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매매대금 등을 망인을 위하여 수령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고는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망인 명의 대출금 변제 20,000,000원, 망인 소유 아파트 관리비 160,750원, 망인 및 G의 이사비용 2,117,700원을 각 지출하였고, 남은 132,721,550원(=155,000,000원 - 160,750원 - 2,117,700원)을 파주시에 있는 P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제주시에 있는 R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는데, 망인이 2019. 9.경 피고의 집을 나갈 때까지 위 각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피고와 함께 거주한 점, 망인은 피고와 거주하면서 K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에서 간경변 및 다른 질병(눈 시신경 및 청력)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또는 생활비는 모두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 스스로 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매매대금 등을 망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망인은 망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67세에 불과하였고, 이후 2021. 5. 18. 사망할 때까지 제주대학교병원 등에서 간경변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등 치매 기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망인은 2020. 10. 6.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호중, 판사 조정익, 판사 정혜미

1) 당초 망인과 G이 피고를 상대로 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와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G은 2022. 6. 7.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망인 소유 아파트가 매도된 것은 2011. 6. 20.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이 해지된 것은 2015. 2. 23.이다.

3) 망인이 2011. 6.경 피고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재산의 범위를 ① 망인 소유 아파트, ② 망인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③ 망인 재산 전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원고가 ①, ②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망인이 다른 재산은 놔두고 일부 재산의 관리만 피고에게 맡긴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